

의안번호	2219435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6. 8. 28.
추 계 번호	26C3040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공식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용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,600만원, 2032년 600만원 등 5년간 총 8,0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(안 제10조의2 신설)	50	—	—	—	—	50	10
위생용품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10조의3 신설)	6	6	6	6	6	30	6
합계	56	6	6	6	6	80	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0조의 2 신설(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)	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0조의3에 따른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추진하여야 함(제1항 신설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제3항 신설)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(제5항 신설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2	안 제10조의3 신설(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	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둠(제1항 신설)	의무규정
		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 신설)	
		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(제5항 신설)	
3	안 부칙 제2조 신설(일회용 식탁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)	이 법 시행 당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회용 식탁보를 제조·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.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(신설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의 2 신설(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)	○	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2	안 제10조의3 신설(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	○	
3	안 부칙 제2조 신설(일회용 식탁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 부칙 시행 시 일회용 식탁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므로 해당 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비용이 발생하지만, 현 시점에 경과조치 적용 대상 업체의 수와 그에 따른 수수료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에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안 제10조의2 및 안 제10조의3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수립(안 제10조의2 신설)
 - 개정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9년~2033년에 대한 5개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시, 2028년에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관련 연구용역 계약금액¹⁾을 참고하여 1개 과제 예산안으로 5,000만원을 가정함
 - 개정안에 따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10조의2 신설)	50	-	-	-	-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제3차(2025-2029)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마련 연구(3,530만원), 위생용품 원료(성분)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(6,870만원)

□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10조의3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하며, 그 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, 연간 회의횟수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유사사례인 위해성 평가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을 준용함
-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민간위원 수, 연간 회의 횟수, 회의 참석 수당 단가의 곱으로 산출
 - (민간위원 수)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, 개정안에서 규정한 25명 이내의 위원 중 약 60%를 민간위원으로 가정²⁾
 - (회의횟수)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,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³⁾
 - (회의수당 단가) 기획예산처의 「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⁴⁾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용품심의위원회 설치 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3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위생용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민간위원 수(명, A)	15	15	15	15	15	-	-
회의 횟수(회, B)	2	2	2	2	2	-	-
회의수당 단가(백만원, C)	0.2	0.2	0.2	0.2	0.2	-	-
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A×B×C)	6	6	6	6	6	30	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'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'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무원 8명,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됨(2026년 7월 1일 기준)

3) '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' 회의는 2023년 연 2회, 2024년 연 2회, 2025년 연 3회 개최됨

4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 -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,000원내(서면심사 15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